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발전용원자로의 정기검사가 운전중에도 가능해짐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방법 등을 보완하여 제도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 총리령 제1953호('24.4.25. 개정, '27.1.1. 시행예정)

2. 주요내용

- 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운영 분야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시설의 성능 및 운영에 대한 검사로 규정 (안 제19조제1항)
- 나. 발전용원자로에 대한 검사기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개정하여 발전용원자로의 운전여부와 무관하게 연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9조제2항, 제3항)
- 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최종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공유하고 있는 원자로시설은 하나의 정기검사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9조제4항)
- 라. 신청서 제출 시 ‘안전성능지표 추이’와 ‘시설별 주요 안전성능 변수 추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안전 관련 주요 지표를 매분기 보고하도록 규정 (안 제19조제5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안 제127조제1항 및 별표 5)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설에”를 “시설의 성능 및 운영에”로, “시설별 검사대상과 세부적인 검사방법”을 “세부적인 검사대상과 검사방법”으로 한다.

총리령 제195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발전용원자로: 최초 상업운전을 개시한 날

총리령 제195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전용원자로(영구정지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발전용원자로:”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를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나. 가목 이후의 검사는 매년 초부터 매년 말까지

제1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시설

에 대해서는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제5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전성능지표 추이

6. 시설별 주요 안전성능 변수 추이

제30조 전단 중 “제23조까지”를 “제23조까지(제19조제5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27조제1항 중 “방사선안전관련”을 “원자로안전관련, 방사선안전관련”으로 한다.

별표 5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발전용원자로운영자	
가. 안전성능지표(원자로안전 영역, 방사선안전 영역)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나. 시설별 주요 안전성능 변수 감시 결과	매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간 종료일의 30일 전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검사기간 시작일을 종전 규정에 따른 검사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 하고 검사기간 종료일은 당해 연도 말일로 한다.

제3조(정기검사를 위한 준비행위)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후 해당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대한 신청서는 2026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4개월
신청인	본사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사 주소		
	사업소 명칭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수검대상 시설		
	검사를 받으려는 기간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30조에 따라 원자로시설 또는 연구용 등 원자로시설의 성능 및 운영에 관한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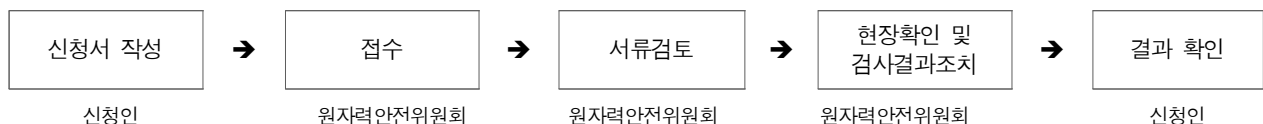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비 및 시험 계획서 1부 1. 검사 대상 시설별 주요 정비내용 2. 운영기술지침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따른 시험계획 3. 교체노심안전성분석에 따른 핵연료 및 원자로의 특성시험계획 4. 시험 및 정비의 주요 공정표 5. 안전성능지표 추이 6. 시설별 주요 안전성능 변수 추이	수수료 없음
------	---	-----------

(비고) 동일 부지 안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의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정기검사) ① 영 제35조제1항(영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u>시설에</u> 대하여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u>시설별 검사대상과 세부적인 검사방법은</u>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원자로시설 설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정기검사) ① ----- ----- ----- ----- <u>시설의 성능 및 운영에</u> ----- ----- ----- ² <u>세부적인 검사대상과 검사방법</u> ----- ----. ----- ----- ----- ----- -----.
1.~ 11.(생략)	1.~ 11.(현행과 같음)
④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u>시설</u> >	④ ----- ----- ----- ----- ----- ----- ² . <u>다만, 동일 부지 안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u>

⑤ 제4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비 및 시험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⑥·⑦ (생략)

제30조(준용규정)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본다.

제127조(보고) ①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판독업무자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방사선안전관련 정기보고 사항과 보고기한은 별표 5와 같

⑤ -----

-----.

1. ~ 4. (현행과 같음)

5. 안전성능지표 추이

6. 시설별 주요 안전성능 변수 추이

⑥·⑦ (현행과 같음)

제30조(준용규정) -----

----- 제23조까지 (제19조제5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
-----.

-----.

제127조(보고) ① -----

-- 원자로안전관련, 방사선안전관련 -----

다.

② (생략)

총리령 제195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정기검사) ② 영 제35조제
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
만, 원자로의 운영상황이나 특
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별도로
검사 시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발전용원자로(영구정지한 경
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시기

가. 최초 상업운전을 개시한
날

나.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
체 후 전출력(全出力)운전
을 재개한 날의 다음 날

2. 영구정지한 발전용원자로: 다
음 각 목의 시기

가. 영구정지한 날

나. 가목에 따른 검사를 시작
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

3. (생략)

③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기

--.

② (현행과 같음)

총리령 제195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정기검사) ② -----

-----.

-----.

1. 발전용원자로: 최초 상업운전
을 개시한 날

<삭 제>

<삭 제>

<삭 제>

2. (현행과 같음)

③ -----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실시한다. 1. <u>발전용원자로(영구정지한 경우는 제외한다)</u>: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최초 상업운전을 개시한 날부터 <u>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u> 나. <u>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u> 2. <u>영구정지한 발전용원자로</u>: <u>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24개월 동안</u> 3. (생략)	----- -----. 1. <u>발전용원자로</u>: ----- ----- -- 가. ----- ----- <u>당해 연도 말까지</u> 나. <u>가목 이후의 검사는 매년 초부터 매년 말까지</u> <삭 제> 2. (현행과 같음)
--	---